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86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김영배 · 최혁진 · 장철민
송기현 · 손명수 · 임미애
민병덕 · 박균택 · 김태선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단순한 현장 실무상 착오를 넘어, 주요 선거사무가 사무처 중심으로 처리되고, 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과 사후 점검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임.

더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라는 특성상 외부의 통제와 감독이 제한되어 온 만큼,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과 사무처리 기준의 공개가 충분하지 않았던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3조제6항 등).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공직선거 등 관리지시·지침, 사무처리에 관한 편람, 재외선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현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모든 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공직선거 관리 업무 또는 선거사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위원 위촉 제한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며, 상임위원 지명 대상에 선거 업무를 10회 이상 담당한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100일 전부터 공직선

거법상 소청·소송제기기간 및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소송 제기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확대하여 선거 전후 관리책임을 강화함(안 제7조).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열릴 경우 회의 안건을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되, 비공개 사안은 공개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신설).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사무총장과 선거연수원장의 보수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제2항·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온 감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감사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자. 감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감사 가능 범위에 더해 선거사무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의4제1항·제2항).

차. 감사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 및 전년도 감사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5항 및 제6항).

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지시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선거사무 협조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의 수준을 최저시급 인상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1에서 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한 선거사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공직선거 등 관리지시·지침, 사무처리에 관한 편람, 재외선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있는 者중에서”를 “있는 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 업무(제16조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또는 협조 요구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3회 이상 경험해 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있는 者중에서”를 “있는 者,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3회 이상 경험해 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者중에서”를 “者,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3회 이상 경험해 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教育公務員은”을 “教育公務員, 일반직 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은 현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모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互選한다”를 “互選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指名하되”를 “의결·指名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거 업무를 10번 이상 담당해 본 3급이상 공무원

제7조 중 “政黨推薦委員은”을 “정당추천위원은”으로, “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지 常勤할 수 있다”를 “國民投票案公告日 10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소청제기기간, 같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223조제1항에 따른 소송제기기간, 「국민투표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제기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상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의가 열릴 경우, 회의 안건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어야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를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로 하고,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가 추천하는 4명, 대통령이 추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③ 감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추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임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감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기구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요 감사사건·비위행위의 조사개시여부·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

5.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나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사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이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은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요사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 및 전년도 감사결과를 3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계行政機關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行政機關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行政機關”을 “국가”로, “公共團體등은”을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選舉類型別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支給額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를 “그 수준은 최저지급 인상률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選舉類型別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支給額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委員會의 職務) ① ~ ③ (생 략) <u><신 설></u> <u><신 설></u>	第3條(委員會의 職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한 선거사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u> <u>⑦ 공직선거 등 관리지시·지침, 사무처리에 관한 편람, 재외선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u>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 ----- ----- ----- -----. <u><후단 삭제> 다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은 현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모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u>

③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의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
는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
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法官・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

② -----

있는 者, 「공직선거법」에 따
른 공직선거 관리 업무(제16조
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또는 협조 요구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를 3회 이
상 경험해 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

[illegible]

에서 6人을 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政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舉期間開始日(委託選舉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 후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舉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4人을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다만, 邑・面의 區域안에 軍人을 제외한 選舉權者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選舉權者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3회 이상 경험해 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

④ -----

-----者,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 업무를 3회 이상 경험해 본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있다.

⑤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이 될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公務員은 居住要件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法官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公務員 이외의 公務員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⑦ ~ ⑬ (생략)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

⑤ -----

教育公務員, 일반직 공무원은-----

-----.

<삭 제>

⑦ ~ ⑬ (현행과 같음)

第6條(常任委員) ①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는 3인,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에는-----
-----.

② -----
-----互選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어

③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舉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u>指名하되</u>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 1. 2. (생략) 3. <u>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상 근무한 者</u> 第7條(政黨推薦委員의 常勤)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u>政黨推薦委員은</u> 選舉期間開始日 또는 <u>國民投票案公告日로부터 開票終了時까지 常勤할 수 있다.</u> 第11條(會議召集) ①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會議는 당해 委員長이 召集한다. <u><후단 신설></u>	<u>야 한다.</u> ③ ----- ----- ----- ----- ----- -----<u>의결・指名하되</u>----- -----. 1. 2. (현행과 같음) 3. <u>선거 업무를 10번 이상 담당해 본 3급이상 공무원</u> 第7條(政黨推薦委員의 常勤) ---- -----<u>정당추천위원은</u>----- -<u>國民投票案公告日 10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소청제기기간, 같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223조제1항에 따른 소송제기기간, 「국민투표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제기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상근하여야 한다.</u> 第11條(會議召集) ① ----- ----- -----<u>. 회의가 열릴 경</u>
---	---

다만, 委員 3分の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會議를 召集하여야 하며 委員長이 會議召集을 거부할 때에는 會議召集을 요구한 3分の 1이상의 委員이 직접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③ (생 략)

第15條(事務機構등) ① (생 략)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事務次長 1人을 둔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④ 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우, 회의 안건은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第15條(事務機構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⑤ ~ ⑰ (생략)
 第15條의2(選舉研修院) ① (생략)
 ② 選舉研修院에 院長 1人을 두며,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 (생략)
<신설>

⑤ ~ ⑰ (현행과 같음)
 第15條의2(選舉研修院) ① (현행과 같음)
 ② -----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대통령이 추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
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감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중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
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
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
립을 지켜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
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
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추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임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감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기구의 조직

<신 설>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요 감사사건·비위행위의 조사개시여부·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요구 사항
5.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나 선거사
무에 대한 감사사건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
는 감사관이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
과를 통보 받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은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
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요
사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계
획 및 전년도 감사결과를 3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第15條의3(公務員의 採用등) (생략)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등) (생략) 제15조의5(국회 보고) (생략) 第16條(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協助要求) ① 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u>관계行政機關</u>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事務를 위하여 人員・裝備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u>行政機關</u>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正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u>行政機關</u>・<u>公共團體</u>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	다. 第15條의5(公務員의 採用등) (현행 제15조의3과 같음) 제15조의6(친족 채용사실의 신고등) (현행 제15조의4와 같음) 제15조의7(국회 보고) (현행 제15조의5와 같음) 第16條(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協助要求) ① ----- ----- -----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② ----- ----- -----<u>국가</u> <u>및 지방자치단체</u>----- ----- ----- ----- ③ ----- ----- -----<u>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u>-----
---	---

야 한다. 第19條의2(特別精勵金 지급) ① · ② (생략)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精勵金은 選舉實施可能期間의 開始日전 3月부터 選舉日후 1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u>選舉類型別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支給額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u>	-----. 第19條의2(特別精勵金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그 수준은 최저시급 인상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u>選舉類型別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支給額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u>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필요 업무 목록(제3조제6항 관련)

구 분	사 무 내 용		
공통사항	기본방침 계획수립 및 시 행	기본방침·중장기 계획등	정 책 사 항
			중 요 사 항
		각급위원회 업무보고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규 칙	위원회 의결 사항
		훈 령 · 예 규	중요 사항의 제정, 개정, 폐지
	법령관련 업무처리 (정치 관계법 제외)	결정사항	
	관계기관 과의 업무협조	정 책 적 사 항	중 요 사 항
감사	감사	감사 계획	
	징계의결 요구 및 고발·수사의뢰	5급 이상 공무원	
	위반행위 조치·처분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위원 관리	위·해촉	
	공무원 임용	5급 이상 공무원임면	
	명예퇴직	5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6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결정	
조직	조직관리	조직발전 기본계획	
		조직 개편 중요사항	
	선거관련 국제기구	국제기구 가입	

구 분	사 무 내 용		
선거관리 - 국내	공직선거·국민투표(재외선거 및 재외국민투표를 제외하며, 선거관리과 소관사무에서 ‘공직선거 등’이라 함)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종합관리계획	
		계획 수정 또는 변경	중요 사항
	공직선거 등 관리지시·지침 작성·시달	종합 관리지침	
	공직선거 등 관리단 편성·운영	기본계획	
	공직선거 등 사무처리에 관한 편람 제·개정	제정	
		개정	중요사항
	공직선거 등 관리 대외협력업무	중요사항	
	선거사무 조정	선거사무 조정 결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등록·등록무효처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지정	
		선거록 작성 및 결과 공표	
		당선인 결정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등록·등록무효처리(후보자등록기간 및 선거기간 중에만 위원회 의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지정	
		비례대표선거록 작성, 비례대표 당선인결정	
	지방 선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지정	
	국민투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 지정	
		국민투표공보안 결정	
		국민투표록 작성·결과공표 등	

구 분	사 무 내 용		
선거관리 - 재외	재외선거(재외국민투표를 포함하며, 이하 재외선거팀 소관사무에서 '재외선거'라 함)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중요사항	
	계획수정 또는 변경	중요사항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미설치 결정	
	재외선거관 운영	운영계획	
정당	중앙당	수리	등록
	정당의 합당	수리	신설합당 등록신청
법제	공직선거,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 주민소환, 주민투표 및 위탁선거 (이하 법제과 소관사무에서 '공직선거 등' 이라 함) 관계 법률의 제·개정 의견 제출 (국회)	의견서(제출안) 확정 및 제출	
	지 방 선 거 선 거 소 청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포함)	중앙위원회 결정 선거소청	소청심사·결정
해석	공직선거, 국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투표 및 위탁선거 (이하 해석과 소관사무에서 '공직선거등'이라 함) 법규에 관한 서면질의 해석·운용	결정·선례 변경 및 새로운 선례 형성	
	정당·정치자금 법규에 관한 서면질의 해석·운용	결정·선례 변경 및 새로운 선례 형성	
조사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위법행위 (선거비용 및 허위사실·비방 범죄 제외, 이하 조사총괄과 소관사무에서 '선거범죄'라 함) 예방·단속	선거범죄 예방·단속	기 본 계 획
	과태료 부과 (대통령선거)	의견제출에 따른 재결정	

구 분	사 무 내 용		
정치자금조사	선거비용 및 정당·정치 자금 관련 위반행위 (이하 정치자금조사과 소관사무에서 ‘정치자금 범죄’라 함) 예방·단속	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기 본 계 획
사이버조사	선거벽보 등의 경력 등 이의제기 및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대통령선거	중요사항
	과태료부과 (대통령선거)	一의견제출에 따른 재결정	